

#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288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: 2023년 12월 19일  
제안자: 환경수자원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소관 사무의 원칙에 따라 시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 골자

- 시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3조제5항).

## 3. 참고사항: 생략

#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5항 중 “하여야 한다”를 “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

##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둘 이상의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자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- ⑤ 시장은 자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관할구역 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또는 관할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4항의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4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자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구청장”이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